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96호 2013. 6. 5.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40호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341호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정선군 조례 제2342호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13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3-345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16
- 정선군공고 제2013-379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정선군공고 제2013-427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31
- 정선군공고 제2013-434호 2020년 정선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사항 열람 공고 3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조 례

제205회 정선군의회(2013.05.22.)에서 의결된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0호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 ○ ○

정선군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정선군의회회장 (인)

[별표 1]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금 액	비고
일비	금100,000원(금일십만원)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절차 규정(제2조~제3조)
-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 규정(제4조)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규정(제7조)
- 검사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제13조)

제205회 정선군의회(2013.05.22.)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1호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정선군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공무원”을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영”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p>	<p>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정선군 지방공무원</u>-----</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u>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u>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p> <p>-----.</p> <p>② (생략)</p> <p>③ ----- <u>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u>공무원여비규정</u>」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u>공무원여비규정</u>」 별표1의 <u>각호</u>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u>공무원 여비 규정</u>」(이하 “<u>영</u>”이라 한다)-----.</p> <p>② ----- <u>영</u> ----- <u>각 호</u>-----.</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u>지방자치단체 공무원</u>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u>공무원</u>-----</p> <p>-----.</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u>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p>제5조(준용) <u>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4. 제18조제1항 단서중 “<u>관용차량 관리규정</u>」 제4조”는 “<u>정선군 관용차량관리규칙</u>」 제3조”로 “<u>동규정 별표 1</u>”은 “<u>동규칙 별표 1</u>”로 본다.</p> <p>5. ~ 8.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 관리규정</u>」 제4조 및 <u>별표 1</u>”은 “<u>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u>」 제4조 및 <u>별표 1</u>”로 본다.</p> <p>5. ~ 8.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공무원 여비 규정」 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별표 1)
 - 1호: 실비
 - 2호: 실비(상한액: 특별시·광역시 50,000원, 그 밖의 지역 40,000원)

제205회 정선군의회(2013.05.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342호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방재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건설방재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건설방재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회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회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3-345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6. 5.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남면	리도	광마선	남면 203호	광덕리 1183	광덕리 340	3.0 (0.20)	광덕리 산 ¹¹⁶⁻² (임)	6.0	6.0	선형개량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건설방재과)

3. 사업시행기간 : 2013.05. ~ 2014.0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리도 남면 203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	편입 (㎡)	주소	성명
1	남면 광덕리	340	전	503	31	남면 광덕리 1051	김종규
2	남면 광덕리	340-1	전	128	128		정선군
3	남면 광덕리	340-2	전	90	6	남면 광덕리 288	석병기
4	남면 광덕리	1039-1	구	3,848	457		(국)건설부
5	남면 광덕리	1043	전	593	17	남면 광덕리 1058	송인옥
6	남면 광덕리	1043-1	도	449	117		(국)건설부
7	남면 광덕리	1044-1	전	2,159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현동 635-1 논현휴먼시아 하늘마을 306-404	전제빈
8	남면 광덕리	1044-3	전	49	49		정선군
9	남면 광덕리	1045	전	2,470	103	남면 광덕리 1053-2	최순이
10	남면 광덕리	1045-1	전	145	137		정선군
11	남면 광덕리	산116-2	임	7,457	449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486	강민정
12	남면 광덕리	산116-3	도	641	457		정선군
13	남면 광덕리	산116-4	임	1,246	82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1번길 26 1층 102호(안양동)	정재순
14	남면 광덕리	산117	임	14,414	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 304-203	김은혜
15	남면 광덕리	산117-3	임	727	727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 304-203	김은혜
16	남면 광덕리	산117-4	임	294	29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 304-203	김은혜
17	남면 광덕리	산263	임	80,826	10	서울 용산구 도원동23 삼성래미안아파트 107-1603	김숙이조
계				116,039	3,123		

노 선 지 정 도

위 성 사 진



정선군 공고 제 2013-379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5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반영 및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규정하고 있는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
 - ※ 기존 조례는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과 상충되어 5년으로 개정
-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을 별표에 추가한다.(안 별표)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60-2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를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매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장 제목 “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을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정년이 5년 이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4장 제목 “비용의보조및반환”을 “비용의 보조 및 반환”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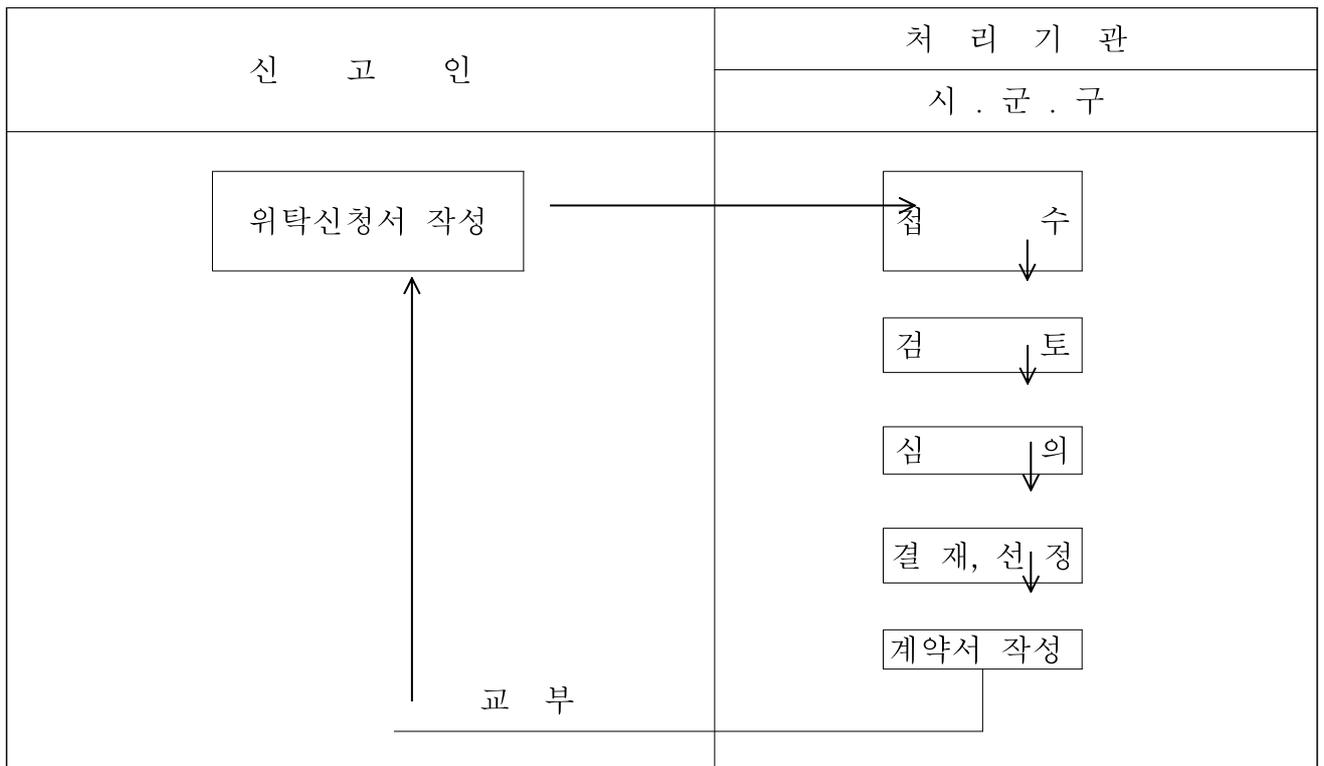
정선군 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설치연월일
정선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8	1990. 4. 3.
사북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2	2004. 3. 1.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1-5	2012. 9. 3.

(뒷면)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

- 시설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 보육시설의 장 성명: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u>	<u>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 ~ ② (생략)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u>매5년마다</u>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5년마다</u> ----- -----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u>1인을 포함하여 15인</u>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u>각 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6. (생략)	제5조(구성) ① ----- ---- <u>1명을 포함하여 15명</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여기간</u> 으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 -- <u>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u> ---- -----.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u>1인</u> 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1명</u> -----.
제3장 <u>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u>	제3장 <u>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u>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위탁계약) ① (생 략) <u>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1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u>5인 이상 10인</u>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4장 <u>비용의보존및반환</u></p> <p>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u>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p>	<p>제14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u>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정년이 5년 이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u>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u> ④ ----- ----- ----- --.</p> <p>제1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 ----- ----- ----- ----- ----- - <u>5명 이상 10명</u> ----- -----.</p> <p>1. ~ 4.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4장 <u>비용의 보존 및 반환</u></p> <p>제22조(보조금의 환수)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4. (생 략)</p>

별표 개정 전·후 대비표

변경전			변경후		
명 칭	위 치	설치년월일	명 칭	위 치	설치년월일
정선 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7-10번지	1990. 4. 3	정선 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정 선읍 봉양4길 8	1990. 4. 3.
사북 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0-10번지	2004. 3. 1	사북 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사 북읍 파랑새길 32	2004. 3. 1.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강원도 정선군 화 암면 그림바위길 1-5	2012. 9. 3.

관계법령 발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2.3.]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공고 제2013-427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6. 5.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사업구간)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m)	포장너비(m)	
정선읍	면도	덕북선	정선 102호	여탄리 441-6	여탄리 15	13 (0.68)	여탄리 513-2	8.0	8.0	도·로 확·포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건설방재과)

3. 사업시행기간 : 2013.06. ~ 2014.12.30.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면도 정선 102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m ²)	편입 (m ²)	주소	성명
1	정선읍 여탄리	산 88	임	18,843	152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71	홍장식
2	정선읍 여탄리	454	전	992	246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95	최영식
3	정선읍 여탄리	456	전	3,012	193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321	김종우
4	정선읍 여탄리	456-1	도	3,445	801	건설부	국
5	정선읍 여탄리	456-2	전	370	168	정선군	군
6	정선읍 여탄리	459-1	전	301	1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69-13 정안연립8차-211	전우권
7	정선읍 여탄리	459-2	전	6,836	1,2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69-13 정안연립8차-211	전우권
8	정선읍 여탄리	459-3	도	6	6	정선군	군
9	정선읍 여탄리	459-4	도	138	103	정선군	군
10	정선읍 여탄리	459-5	도	133	4	정선군	군
11	정선읍 여탄리	463	전	470	242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321	김종우
12	정선읍 여탄리	463-1	도	29	29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321	김종우
13	정선읍 여탄리	464	전	5,101	690	정선군 정선읍 덕산기길 15	엄도원
14	정선읍 여탄리	464-1	전	4,601	285	정선군 정선읍 여탄길 192	김종우 외2인
15	정선읍 여탄리	467	전	8,855	463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7-21	하동정씨 여탄리총친회
16	정선읍 여탄리	467-1	도	136	136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7-21	하동정씨 여탄리총친회
17	정선읍 여탄리	470	전	4,286	66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52	최돈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면도 정선 102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	편입 (㎡)	주소	성명
18	정선읍 여탄리	470-1	도	276	209	정선군	군
19	정선읍 여탄리	472-1	도	147	1	정선군	군
20	정선읍 여탄리	473	전	2,735	121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73	최종런
21	정선읍 여탄리	473-1	도	177	97	정선군	군
22	정선읍 여탄리	481-1	구	10,998	196	건설부	국
23	정선읍 여탄리	499	전	6,946	233	군	정선군
24	정선읍 여탄리	499-1	도	85	85	군	정선군
25	정선읍 여탄리	499-2	전	189	164	군	정선군
26	정선읍 여탄리	501	전	9,685	7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90-1	최백순 외2인
27	정선읍 여탄리	501-2	전	14	14	정선군	군
28	정선읍 여탄리	502	전	690	111	정선군	군
29	정선읍 여탄리	502-1	도	475	20	건설부	국
30	정선읍 여탄리	502-2	전	269	60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90-1	최백순 외2인
31	정선읍 여탄리	503	전	296	18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90-1	최백순 외2인
32	정선읍 여탄리	503-1	전	18	18	정선군	군
33	정선읍 여탄리	504	전	1,404	24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13	최종철
34	정선읍 여탄리	504-1	도	1,030	267	건설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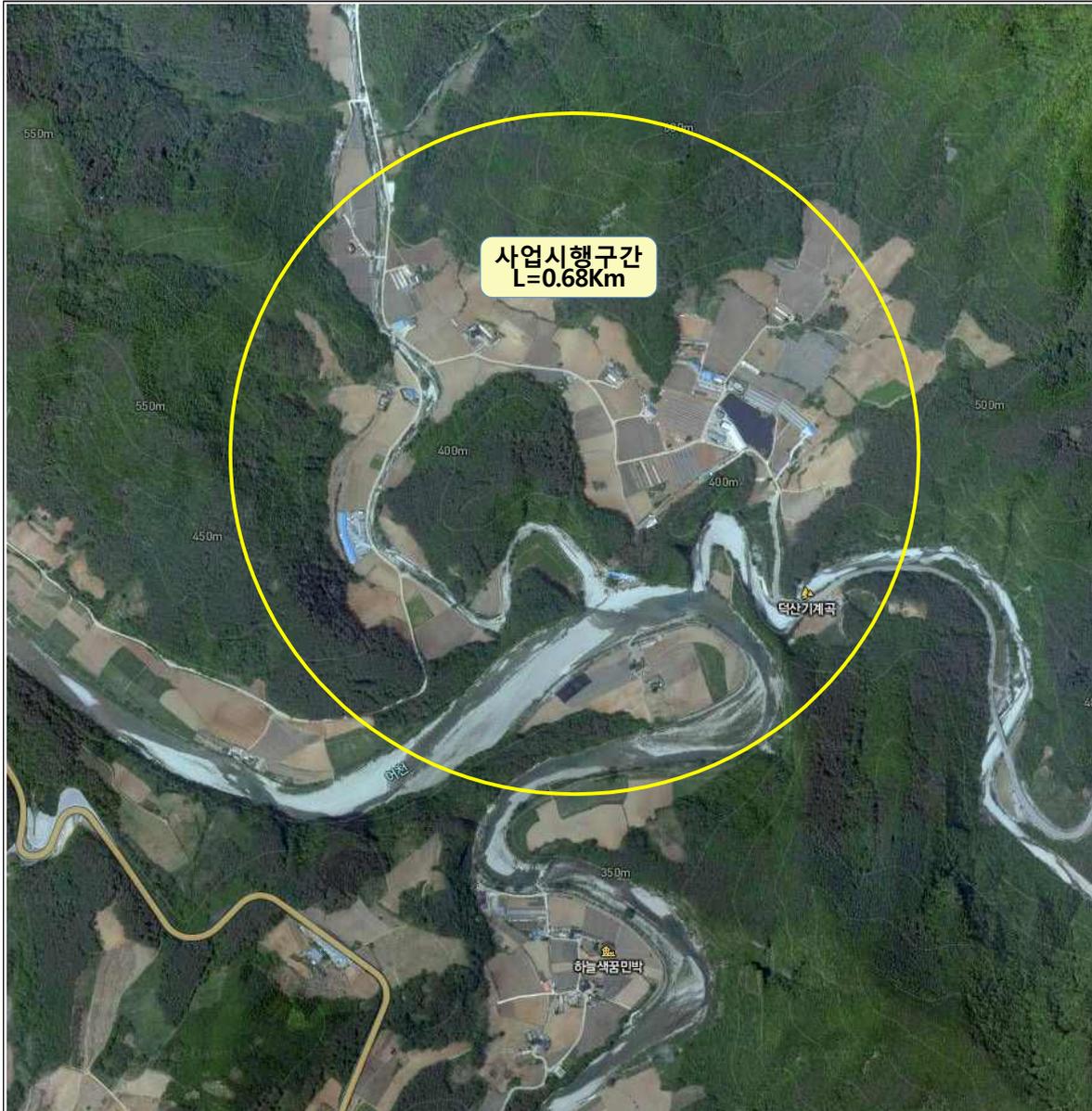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면도 정선 102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	편입 (㎡)	주소	성명
35	정선읍 여탄리	504-2	도	4	4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13	최종철
36	정선읍 여탄리	505-1	전	6,062	53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85-1 풍운빌라201호	최도순 외1명
37	정선읍 여탄리	505-3	도	241	203	정선군	군
38	정선읍 여탄리	505-4	도	234	101	정선군	군
39	정선읍 여탄리	506	전	203	123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13	최종철
40	정선읍 여탄리	506-1	도	2	2	정선군	군
41	정선읍 여탄리	507	전	112	112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79	정찬영
42	정선읍 여탄리	507-1	도	86	25	정선군	군
43	정선읍 여탄리	508	전	1,377	53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93	유형근
44	정선읍 여탄리	508-1	도	4	4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93	유형근
45	정선읍 여탄리	510	전	4,983	883	원주시 단구동 1454-4 협동연립 가-305	전창식
46	정선읍 여탄리	510-1	도	848	780	정선군	군
47	정선읍 여탄리	510-2	전	224	100	원주시 단구동 1454-4 협동연립 가-305	전창식
48	정선읍 여탄리	510-3	전	5,031	650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96	유병천
49	정선읍 여탄리	512-1	도	4	4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5-42	홍장식
50	정선읍 여탄리	513	대	660	13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96	유병천
51	정선읍 여탄리	513-1	도	353	101	정선군	군

노 선 지 정 도

위 성 사 진



정선군 공고 제2013-434호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사항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기에,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 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5일

정 선 군 수

- 1. 공고목적 :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사항 열람
- 2. 주요내용
 - 목표연도 : 2020년(변경 없음)
 - 계획인구 : 65,000명(변경 없음)
 - 계획구역 : 1,220.670km²(변경 없음)
 - 공원 및 녹지계획 : 삼탄체육공원 면적 축소

시설명	위 치	면 적(km ²)		
		기 정	변 경	변경 후
삼탄체육공원	고한읍 고한리	0.459	감) 0.095	0.364

- 3. 열람기간 : 2013. 06. 5. ~ 2013. 07. 5. (30일 이상)
- 4.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
-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